

북한의 상업·유통 관련 법제 정비의 함의 - ‘옥심상점’, ‘우리 가정수첩’의 재현 -

김미연 |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nkkmy83@kdb.co.kr

I. 들어가며

2021년 1월에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했던 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음을 시인하였다. 이어 2021년부터 새로이 추진할 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정비·보강’에 초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 경제 등 특권 경제에 대한 내각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경제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였다.¹⁾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형사, 재정·금융, 상업·유통 부문 전반에 걸쳐 주요 법령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형사소송법」(‘21. 1. 20. 개정)을 시작으로 「형법」(‘23. 12. 24. 개정)에 이르기까지 8개 종류의 형사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²⁾ 재정·금융 부문에서도 「재정법」(‘21. 8. 17. 개정)을 포함하여 「금융감독법」(‘23. 10. 20. 제정) 등 6개 종류의 법제 정비가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법제·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 키워드로 ‘통제’, ‘규율·질서 확립’ 등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상업·유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내부의 상업활동을 관장하는 「사회주의 상업법」(‘21. 8. 11. 개정)과 함께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무역법」(‘22. 1. 29. 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국가의 조절통제력 강화’,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라는 단어들도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³⁾

1) 양문수 외, 『북한경제 공식문헌 해제』, 기획재정부, 2024, pp.19~22.

2) 형사 관련 법제 정비: 「이동통신법」(‘21. 8. 11. 개정), 「청년교양보장법」(‘21. 9. 29. 제정), 「반동사상문화배격법」(‘22. 8. 19. 개정), 「행정처벌법」(‘22. 12. 6. 개정), 「평양문화어보호법」(‘23. 1. 18. 제정), 「인민반조작운영법」(‘23. 12. 21. 제정), 재정·금융 관련 법제 정비: 「회계검증법」(‘22. 11. 15. 개정), 「대부법」(‘23. 2. 2. 제정), 「전자결제법」(‘23. 7. 15. 개정), 「중앙은행법」(‘23. 7. 15. 개정), 「금융감독법」(‘23. 10. 20. 제정), 『북한 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24. 8; 『북한 법령집 下』, 국가정보원, 2024. 8.

본고는 법이 사회 내에서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하부구조인 경제 관계의 발전에 따라 생성, 변화하고 소멸한다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법률관과 법이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스탈린주의적 법률관이 북한 법제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에 주목한다.⁴⁾ 북한의 상업·유통 관련 법제 정비 현황을 통해 북한 당국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해당 부문에서의 문제점 등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북한경제 관련 법제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 정도를 평가하고, 시장경제 제도로의 이행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윤대규·김근식(2008)은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가 이미 자생적으로 정착한 시장경제 현실을 사후 제도화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하였다. 송현옥(2014)은 북한 「상업법」에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높은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계획경제 체제로의 회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이준섭(2019)은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시장 관련 법제들은 시장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김영희·김병욱(2024)은 「사회주의 상업법」개정이 그간 북한 당국이 표방해 온 평등분배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업제도 운영에 시장 기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⁵⁾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최근 북한이 법제 정비를 추진한 목적이 ‘당국의 통제 및 관리 강화’라는 점이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이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법제 정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시장경제제도에 점차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법제 정비의 내용이 현재 북한 당국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경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성급함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분석과 달리 다음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특정 법에 한정하지 않고, 상업·유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제 정비 내용의 공통적 특징을 밝히고 그 함의를 해석한다. 둘째, 과연 이러한 법제 변화가 과거 북한이 추진해 온 상업·유통 정책과 다른 새로운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옥심상점’과 ‘우리 가정수첩’의 사례와 견주어 답하고자 한다.

3) 「상품식별부호관리법」(‘21. 4. 30. 제정), 「령수증법」(‘21. 10. 29. 제정), 「정보식별부호관리법」(‘21. 10. 29. 제정), 「상표법」(‘22. 6. 30. 개정), 「상품류통법」(‘23. 8. 30. 제정), 「전자상업법」(‘24. 11. 16. 제정), 『북한 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24. 8; 『북한 법령집 下』, 국가정보원, 2024. 8. 및 언론 보도 내용 종합.

4) 권우현,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1)-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2010, pp.362~366.

5)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pp.195~196; 송현옥, 「북한 상업유통시장 법제도의 현황과 변화전망」, 『亞洲法學』, 제8권 제2호, 2014, pp.400~406; 이준섭,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亞洲法學』, 제13권 제2호, 2019, pp.135~151; 김영희·김병욱,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통일정책연구』, 제33권 2호, 2024, pp.221~257.

II. 북한의 상업·유통 관련 법제 정비 현황과 특징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상업·유통 분야에서 다수의 법을 새로 정하였다. 1992년 제정 이후 8번째 개정인 「사회주의 상업법」, 1998년 제정 이후 9번째 개정인 「상표법」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상업·유통 관련 법 모두가 새로 제정되었다. 개별법 수록 내용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첫째, 기업 간 경쟁, 공급 상품 부족 등 상업·유통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벌금 등 제재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관리·통제를 강화하였다. 셋째, 상품의 유통,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자금이 중앙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⁶⁾

1. 상품 부족, 수입·가짜 상품 판매 등 상업·유통 현실 반영

2021년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은 상품의 생산, 공급을 넘어 판매도 포함하고 있다(제2~3조). 개정법 조항대로라면 이제는 상업기관(협동단체)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풍부하다면 주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지만 물품 자체가 부족하다면 법의 사명으로 언급된 주민생활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개정법 제7조는 주민들에게 공급·판매할 상품이 부족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김정은 집권 이전 개정된 2010년 「사회주의 상업법」(제6조)에서는 상품 유통 원칙으로 ‘완전한 공급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물건이 넉넉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정도로 생산력이 뒷받침되는 조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문에서는 ‘완전한 공급제’가 사라지고 ‘국영상업망을 통해 상품을 유통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공급’한다(제8조)는 ‘정상적으로 공급, 판매’한다(제9조)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조항은 주민 1인당 정해진 상품의 품종, 수량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급 또는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하지 않은 상품 공급 현실에서 북한 당국의 경제적 책임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또한, 북한 당국이 반드시 책임지고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중요 대상에 기존 탄광, 광산 이외에도 발전소, 학원, 애육원, 육아원이 포함되었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제18조). 뿐만 아니라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등 공로자

6) 개정법의 내용은 김정은 집권(2012년)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7) 김영희·김병욱,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통일정책연구』, 제33권 2호, 2024, pp.239-240.

들을 대상으로 상업봉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제65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품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상품 수요 산정을 생산과 수입을 모두 고려하게 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가 계획에 반영할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직매점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을 판매하고 수입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항(제24조)과 상업기관과 기업소로 하여금 수입 상품을 개별 주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항(제27조)을 통해 수입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거래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수입 상품에 대한 공급, 판매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조절과 통제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한편, 2022년에 개정된 「상표법」에는 기업 간 상품 판매 경쟁과 가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유통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상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품 등록 신청 및 심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제13조, 제20조). 특히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짜 상표에 대한 제작, 이용, 매매 시 손해보상 및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에 이용된 설비, 상표, 상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46~제50조). 이외 2021년에 제정된 「상품식별부호관리법」, 「정보식별부호관리법」에서도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중앙의 관리·통제 강화

최근 제·개정된 법령의 특징은 개별법마다 법의 사명을 제1조에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해당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지향점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제도 및 질서 확립, 규제, 통제력 강화, 통일적 장악 등의 단어로 미루어볼 때 법의 제·개정 목적이 자율성 확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 당국은 경제발전, 주민생활 향상, 사회경제적 안정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법에 수록된 사명 이외에도 북한 당국의 관리·통제가 강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다음 <표 2>에 제시된 ‘정보화’에 있다. 상업·유통 분야에서의 정보화는 주민생활의 편의성 및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과 함께 상품 유통 관리 강화 역할을 한다.⁸⁾ 모든 상품이 북한 당국의 등록, 인증체계 안에서 유통됨으로써 상품의 수량, 품목, 유통

8) 김영희, 「최근 북한의 상업유통정책 변화와 국영상업 실태 분석」, 『KDB북한개발』, 통권 34호,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25, pp.78-80.

<표 1> 상업·유통 관련 개별법에 명시된 사명

법령	사명	비고
사회주의 상업법	상업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통과 봉사사업을 발전 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	개정
상표법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	개정
상품식별부호관리법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판매를 경보화하고 위조상품의 류통을 막음으로써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	제정
정보식별부호관리법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와 경제활동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제정
령수증법	령수증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거래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물자와 자금의 류동정형을 통일적으로 장악함 으로써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	제정
상품류통법	상업법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 유통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 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	제정 (보도 내용)
전자상업법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	제정 (보도 내용)

자료: 『북한 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24. 8; 『북한 법령집 下』, 국가정보원, 2024. 8.

<표 2> 상업·유통 관련 개별법에 수록된 정보화 내용

법령	정보화 관련 내용	비고
사회주의 상업법	생산, 수입한 상품이 국가적인 등록, 인증체계 안에서 국영 상업망을 통하여 류통되도록 한다.	제6조 (상품류통원칙)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상업체계를 구축, 리용하여 모든 상품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류통시켜야 한다.	제76조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상품식별부호관리법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어놓고 리용 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의 구비)
정보식별부호관리법	수입상품과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같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품을 비롯하여 경해진 상품에는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 시켜야 한다.	제10조 (정보식별부호매체의 부착)
	정보식별부호매체를 부착시킨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봉사 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식별수단의 의무적구비)
령수증법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경제거래관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령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무적인 령수증발급)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령수증관리사업의 정보화 를 실현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바로세우고 집행 하여야 한다.	제17조 (령수증관리사업의 정보화)

자료: 『북한 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24. 8; 『북한 법령집 下』, 국가정보원, 2024. 8.

과정, 매출, 소비 패턴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상품에 바코드(상품식별부호), QR코드(정보식별부호) 부착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는 북한 당국이 상품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상업·유통 분야 ‘허가 사항’에 관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북한 당국의 관리·통제 강화 양상이다. 개정 「사회주의 상업법」의 영업허가(제81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등 영업활동에 대한 허가를 기존에는 중앙에서 담당했으나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시장의 관리운영(제86조)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시장을 설치하게 하는 등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는 여전히 중앙이 담당하지만 지방인민위원회도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법의 허가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면 권한이 하부로 분산되고 허가 절차가 완화 또는 간소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허가는 국영봉사망을 활성화하는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및 가격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관리·통제 수준이 낮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재정 확보 수단

북한 당국은 사실상 8차 당대회 이전부터 경제관리 개선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다. 예컨대 2020년 3월 7일 자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국가상업체계와 사회주의 상업 복원을 위한 방법으로 국영상업망을 통한 상품 유통 활성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국가 수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⁹⁾ 8차 당대회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살려 나가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조절 통제력 회복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¹⁰⁾ 또한, 2024년에 발간된 북한의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에 실린 단편 연구논문에서는 자금이 국가 수중에 집중되지 못하는 위법한 상업활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상점, 식당 등이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경영하거나 개별 단위들이 특수성을 내세워 상업봉사를 진행함으로써 경제성과 농촌진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금 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중앙의 통제·관리 속에 상업활동 및 관련 재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¹⁾

9) 『노동신문』,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20. 3. 7.
10) 『노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 1. 9.
11) 오광천,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는 것은 현시기 인민봉사활동의 중요한 요구」,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4년 제4호, 2024, pp.36~37.

이처럼 상품 유통에 대한 관리는 북한 당국의 재정 확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021년에는 상품 판매 정보화를 위해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을 통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¹²⁾ 「상품식별부호관리법」에서는 상품 생산기관이 상품에 반드시 식별부호를 부착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 「정보식별부호관리법」에서도 수입 상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등 정해진 상품에 대해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벌금 부과를 통해 강제하고 있다. 동법은 수입 상품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수입 상품 거래를 통한 내화 및 외화의 불법적 유통을 차단하여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령수증법」은 법의 사명에 직접적으로 국가 재정 강화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거래 등을 차단하고 세금 회피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표 3〉 상업·유통 관련 개별법에 반영된 벌금 부과 사항

법령	벌금 처벌 내용	벌금액
상품식별부호관리법	상품식별부호를 국가규격에 맞지 않게 표기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항목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으로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10만~20만원
	상품식별부호를 위조하여 표기하거나 상품식별부호가 표기된 제품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10만~20만원
	1차상품식별부호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정보식별부호관리법	승인되지 않은 단위가 정보식별부호를 인쇄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정보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만들어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 되어있는 상품에 매체를 부착시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특수재질의 재료를 리용하지 않아 위조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갖추지 않고 봉사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령수증법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 또는 식별수단의 생산에서 국가규격을 어겼을 경우	10만~50만원
	령수증수요타산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만~30만원
	령수증발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20만~100만원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의 보관,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분실, 도난, 소각되었을 경우	10만~50만원
	령수증용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30만~150만원

자료: 『북한 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24. 8; 『북한 법령집 下』, 국가정보원, 2024. 8.

12)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 진행」, 2021. 5.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사정연설(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2021. 9. 30;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는데서 중시한 문제」, 2021. 11. 20.

III. 국가상업 개선 정책의 모범 사례

1. 김옥심의 ‘룡연(옥심)상점’

1953년 평안남도 안주군에 위치한 소비조합 ‘룡연상점’의 판매원이었던 김옥심은 당시 북한 당국이 모범 상업일꾼으로 인정한 사람이다. 1955년 점장으로 승진한 이후 주민들이 룡연상점을 ‘옥심상점’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녀의 사업방식은 국가상업망 확장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몸소 실천하여 농민들을 국영상업망으로 끌어들이는 모범 사례로 알려졌다. 당시 많은 농촌 소비조합과 국영상점에는 부족한 상품, 불친절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개인상인과 달리 국영상점 판매원은 상품 판매와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김옥심은 주민을 위한 봉사성 하나만으로 개인상인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 농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동판매, 주문배달판매, 현물교역, 소포판매 등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여 매출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의 재정을 악화시켰던 개인상인들의 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상업망 안에 대부분의 소비를 인입시켰다. 이후 북한 당국은 전국적으로 김옥심의 ‘사회주의 상업’ 사업방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¹³⁾

〈표 4〉 소매상품 유통의 소유 형태별 구성

소유 형태	1949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소매상품유통총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가상업(%)	27.9	32.0	39.1	50.6	53.9	48.8	69.2
협동단체상업(%)	28.6	35.5	32.8	34.0	33.4	39.1	30.7
개인상업(%)	43.5	32.5	28.1	15.4	12.7	12.1	0.1

자료: 이준희(2019), p.542.

¹³⁾ 1957년 상변기 종합상점 94개소, 공업품상점 21개소, 식료품상점 131개소, 양곡배급소 170개소, 식당 28개소 총 444개소가 증설되어 전국적으로 국가상업망이 확장되었다. 이준희,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과 ‘옥심상점’」, 『민족문화연구』, 제85호, 2019, pp.544~552.

2. 정춘실의 ‘우리 가정수첩’

1941년에 태어나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으로 30년간 근무한 정춘실은 1991년 10월, 김정일이 ‘정춘실 따라 배우기 운동’을 선포할 만큼 모범적인 상업일꾼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가정수첩’으로 이름난 정춘실은 가구별 장부를 만들어 주민들의 필요한 상품 수요를 파악하여 부족한 생필품을 공급하였다.¹⁴⁾ 정춘실의 우리 가정수첩은 사회주의 상품 공급 방법의 대발명이자 본보기로 회자되며, 상업일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도 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상업일꾼의 역할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상품을 주문, 확보하여 공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축적됨으로써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IV. 상품등록정보체계 ‘경쟁’ : 옥심상점, 우리 가정수첩의 재현

북한은 2023년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전자상업의 발전이 중요하며, 상품등록정보체계 ‘경쟁’이 개설되어 상품유통사업에서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¹⁵⁾ 북한은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정한 규약에 따라 연결된 전자망에서 이루어지는 상업활동을 의미한다. 거래 과정에서 정보, 물자, 화폐의 흐름이 컴퓨터망정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품의 선택, 송달, 접수 등이 컴퓨터망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 진행된다.¹⁶⁾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전자상업봉사체계 ‘복리’를 개발한 내용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복리’는 정춘실의 ‘우리 가정수첩’ 정보화 버전으로 국가컴퓨터망에서만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만물상’, ‘앞날’ 등과 같은 홈페이지와 달리 휴대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품에 대한 열람, 주문, 구입이 가능하다.¹⁷⁾ 덕분에 주민들은 상품 구매가 편리해졌다.

김정일이 사회주의 상업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에는 ‘옥심상점’부터 ‘우리 가정수첩’, 그리고 현재의 상품등록정보체계 ‘경쟁’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 사항이 있다.

14) 수첩에는 주민들의 복강 및 신발 치수, 결혼 등 경조사 날짜, 집안 대소사 등이 적혀 있어 필요한 날에 상품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궤문완, 「경제대상 1호, 정춘실」, 『北韓』, 2016. 2, pp.117~123; 『노동신문』,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키워준 은혜로운 품」, 2020. 9. 3.

15) 『노동신문』,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더욱 살려나가자」, 2023. 10. 4.

16) 장원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체계 변화와 시사점」, 『통일과 법률』, 제57호, 2024, p.35.

17) 『SPN』, 「평양광명정보기술사, 전자상업봉사체계 ‘복리’ 호평... 전자결제·상품주문 가능」, 2023. 4. 5.

〈표 5〉 국영상업 활성화 세부방안

2021년 2월	2021년 11월	2023년 8월	2024년 11월	2025년 2월
주문계약에 의한 상품유통	소비상품 가격정보체계 확립	사회주의 상업 본태 구현	사회주의 상업 본태 구현	국영상업망을 통한 상품유통체계 확립
주문계약 대상 상품지표 설정, 주문 및 계약 체결, 상품 유통망·수송·결제 관련 사업을 중앙에서 조절·통제	국가가격기관, 소비상품생산기관, 무역·상업기관, 계획·통계기관, 재정은행 등은 가격 정보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연결	국영상업기업소 자금 확보, 상품등록정보체계 구축, 국영상업망을 통한 상품유통체계 확립(국내 생산품 및 수입품)	개별 상업기관의 비법적 상업활동 금지, 전국적으로 국영상업 활성화	상품의 생산·유통·판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품등록정보체계 구축

자료: 2021~25년 권호별 『사회과학원 학보』 수록 논문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첫째,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하지 않게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국영상업을 활성화하여 국가상업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5〉에서 북한 당국이 국영상업 활성화 강조를 지속한 내용과 이를 위해 제시한 세부 방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중앙의 조절·통제,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가 핵심인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최근 상업·유통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시장경제제도에 점차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의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상업 부문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국가의 관리를 통한 원활한 상품 공급, 상업일꾼의 봉사성 강조 등에서 진전된 것은 현재에 걸맞은 정보화 수단이 가미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상품 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보화 수단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질 좋은 상품이, 지역마다 고르게 주어지는 것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8) 리진수, 「주문계약에 의한 물자유통조직엔 나서는 중요요구」,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1년 제1호, 2021, pp.36~37; 심금주, 「소비상품가격정보체계의 경제적내용과 의의」,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1년 제4호, 2021, pp.43~44; 박철민,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3년 제3호, 2023, pp.43~44; 오광천,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는 것은 현시기 인민봉사활동의 중요한 요구」, 『사회과학원 학보』, 2024년 제4호, 2024, pp.36~37; 전성진, 「국영상업망을 통한 상품유통체계의 확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5년 제1호, 2025, pp.27~28.

참고문헌

- 곽문완, 「경제대상 1호, 정춘실」, 『北韓』, 2016.
- 김영희, 「최근 북한의 상업유통정책 변화와 국영상업 실태 분석」, 『KDB북한개발』, 통권 34호,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25.
- 김영희·김병욱,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통일정책연구』, 제33권 2호, 2024.
- 『노동신문』, 「현시기 경제사업체제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20. 3. 7.
- _____, 「인민의 참된 행복으로 키워준 은혜로운 품」, 2020. 9. 3.
- _____,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 1. 9.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 진행」, 2021. 5. 2.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2021. 9. 30.
- _____,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는데서 중시한 문제」, 2021. 11. 20.
- _____,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더욱 살려나가지」, 2023. 10. 4.
- 리진수, 「주문계약에 의한 물자유통조직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1년 제1호, 2021.
- 박철민,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3년 제3호, 2023.
- 『북한 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24.
- 『북한 법령집 下』, 국가정보원, 2024.
- 송현욱, 「북한 상업유통시장 법제도의 현황과 변화전망」, 『亞洲法學』, 제8권 제2호, 2014.
- 심금주, 「소비상품가격정보체제의 경제적내용과 의의」,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1년 제4호, 2021.
- 양문수·이석기·이종규·최지영·박기찬·정연욱, 『북한경제 공식문헌 해제』, 기획재정부, 2024.
- 오광천,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는 것은 현시기 인민봉사활동의 중요한 요구」,

-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4년 제4호, 2024.
-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 이준섭,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亞洲法學』, 제13권 제2호, 2019.
- 이준희,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과 ‘옥심상점」, 『민족문화연구』, 제85호, 2019.
- 장원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통일과 법률』, 제57호, 2024.
- 전성진, 「국영상업망을 통한 상품류통체계의 확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5년 제1호, 2025.
- 전우현,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1)-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2010.
- 『SPN』, 「평양광명정보기술사, 전자상업봉사체계 ‘복리’ 호평... 전자결제·상품주문 가능」, 2023. 4. 5.